

[문서 번호: SEC-2025-001]

[시행 일자: 2025. 01. 01]

## 보안 및 IT 운영 통합 규정

### 1.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

(본 계획은 '개인정보 보호법' 제29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립된 법적 필수 규정입니다.)

#### 제1장 총칙

##### 제1조 (목적)

본 계획은 회사가 처리하는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보호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# 제2조 (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CPO)

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 처리를 지휘·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를 지정하며, CPO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실태 점검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.

#### 제2장 안전성 확보 조치

##### 제3조 (접근 권한의 관리)
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한다.
-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자체 없이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.

##### 제4조 (암호화 조치)

-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등), 비밀번호, 바이오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.
-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
##### 제5조 (접속 기록의 보관)

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1년 이상(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2년 이상) 보관 및 관리하며, 월 1회 이상 점검한다.

#### 제6조 (교육)

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.

## 2. 정보보안 규정

### 제1장 정보의 분류 및 취급

#### 제1조 (정보 등급 분류)

회사의 문서는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.

- 극비(Top Secret):** 유출 시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핵심 기밀 (경영 전략, 미공개 기술 등).
- 대외비(Confidential):** 회사 내부에서만 공유되어야 하며 외부 공개가 제한된 정보 (인사 정보, 영업 실적 등).
- 일반(Public):** 외부에 공개되어도 무방한 정보.

#### 제2조 (정보의 반출)

- 업무상 필요에 의해 중요 정보를 외부로 반출(이메일 발송, USB 저장, 출력 등)할 경우, 사전에 부서장 및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퇴사 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반납 및 파기하여야 하며, 무단 반출 시 민형 사상 책임을 진다.

### 제2장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

#### 제3조 (비밀번호 설정)

- 비밀번호는 영문, 숫자,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자리 이상(또는 10자리 이상)으로 설정해야 한다.
- 연속된 숫자, 생년월일, 전화번호 등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을 금지한다.
- 비밀번호는 최소 3개월(분기)마다 1회 이상 변경해야 한다.

## 3. IT 자산 및 소프트웨어 사용 가이드

## **제1장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**

### **제1조 (자산의 사용)**

회사에서 지급된 IT 자산(PC, 노트북, 모니터 등)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로 부품을 분해, 교체, 반출해서는 안 된다.

### **제2조 (네트워크 사용)**

1.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트래픽 유발 행위(P2P, 스트리밍, 대용량 파일 전송 등)를 금지한다.
2. 인가받지 않은 사설 공유기(AP)를 사내망에 무단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.

## **제2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**

### **제3조 (정품 사용 의무)**

1. 회사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(Crack, Keygen 등)의 설치 및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.
2.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소프트웨어(게임, 메신저, 주식 HTS 등)를 임의로 설치하여 발생하는 보안 사고 및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.

### **제4조 (점검 및 감사)**

IT 관리 부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및 보안 점검을 위해 불시에 임직원의 PC를 점검할 수 있으며,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--

## **4. 재택 및 원격 근무 보안 가이드**

### **제1장 접속 및 환경 보안**

#### **제1조 (보안 접속)**

1.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회사가 지정한 가상사설망(VPN) 또는 원격 접속 솔루션(VDI)을 통해서만 접속해야 한다.
2. 보안이 취약한 개방형 공용 Wi-Fi(카페, 공항 등 비밀번호가 없는 네트워크) 사용을 금지하며, 부득이한 경우 모바일 테더링을 권장한다.

### **제2장 단말기 보안**

#### **제2조 (보안 조치)**

원격 근무에 사용하는 기기(개인 PC 포함)는 다음의 보안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.

1. 운영체제(OS) 및 소프트웨어 최신 보안 패치 적용.
2.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.
3. 부팅 및 화면 보호기 암호 설정 (5분 이상 미사용 시 자동 잠금).

### 제3장 데이터 보호

#### 제3조 (정보 유출 방지)

1. 업무 관련 파일은 사내 서버(클라우드, 그룹웨어 등)에서만 작업 및 저장해야 하며, 개인 PC의 로컬 디스크나 개인 USB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.
2. 공공장소나 타인이 있는 공간에서 근무 시 화면 보안 필름을 부착하거나, 등 뒤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좌석 배치에 유의한다.
3. 화상 회의 시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할 때, 업무와 무관한 민감 정보나 배경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